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400095  
신청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SK Hynix Inc.)  
피신청인 : Yunhee Kim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SK Hynix Inc.)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대리인 : 법무법인 오현(담당변호사 김영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41, 3층(서초동, 인화빌딩)

피신청인: Yunhee Kim

청주시 2순환로 1050번길 24

분쟁 도메인이름은 "skhynix.company"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가비아(성남시 분당구 대왕관교로 660 유스페이스 1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4. 5. 26.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4. 5. 2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4. 5.28.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4. 5. 2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4. 5. 2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4. 6. 18.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4. 6. 17.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4. 6. 20. 센터는 김종윤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4. 6. 23.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이었는데 2012년경 현재의 모그룹인 SK그룹으로 인수되면서부터 ‘에스케이 하이닉스(SK

HYNIX) 주식회사' 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신청인이 SK그룹으로 인수 되는 과정은 2011년 말경부터 당시 언론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었고, 신청인은 상호변경 및 그 홍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신청인은 변경된 상호의 요부인 'SK HYNIX' 표장을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 받았고, 또한 이 상표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도메인이름들, 즉 'skhynix.com' 및 'skhynix.co.kr'을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2014. 3. 31. 등록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종용하였고, 2014. 4. 13.에는, 이 도메인이름을 구입하지 않으면 경매 사이트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이메일을 신청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NgTLD(New Generic Top Level Domain name)임을 나타내는 확장자인 '.compan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khynix'인데, 이는 신청인이 미국 특허청에 2013. 3. 20. 출원하여 2013. 10. 22. 등록받은 등록 제4,421,811호 상표인 'SK hynix'와 동일하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skhynix'라는 단어는 그 자체 아무런 뜻이 없는 단어이고, 일반적으로 신청인을 지칭하는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애초부터 신청인에게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도메인이름을 확보한 것일 뿐, 이 도메인이름을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의 대표이사, 주주, 임원 등에게 접근하여 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규정 제4조 b항의 (i)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 B. 피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2013년부터 새롭게 허용된 NgTLD 중 '.company'가 기업에 중요한 것임에도 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신청인을 위해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인 'skhynix'를 '.company' 도메인으로 먼저 등록을 받아 외국인 등이 이를 선점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다.

NgTLD로서 .company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허용할 당시,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에게 상당기간 우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 우선기간 동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인데, 신청인이 지금에 와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은 도메인 등록기관인 가비아로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구입할 당시 어떠한 약관도 보지 못했고, 분쟁 시 강제 양도 또는 말소된다는 약정도 보지 못했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NgTLD임을 나타내는 확장자 '.company'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khynix'인데, 이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의 명칭 등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것은 신청인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바 이로부터 보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리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사실관계 및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은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었거나, 또는 경매나 타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규정 제4조 b항 (i) 및 (iv)에서 예시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도메인 등록기관인 가비아로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구입할 당시 어떠한 약관도 보지 못했고, 분쟁 시 강제 양도 또는 말소된다는 약정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도메인이름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등록약관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skhynix.company>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김종윤  
1인 조정부인

결정일: 2014년 7월 14일